

## 영국중재법상 중재비용의 확보 수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ns for Securing of Arbitration Expenses under the UK Arbitration Act

한낙현\*

Nak-Hyun Han

최두원\*\*

Doo-Won Choi

#### 〈목 차〉

- I. 서 론
  - II. 중재인의 수당청구권
  - III. 중재인의 수당·경비의 내용
  - IV. 중재비용 납부의 확보 수단에 대한 시사점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영국중재법, 중재인의 수당·비용, 중재인의 선정, LMAA Terms 2017

\* 경남대학교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주저자), [nhhan@kyungnam.ac.kr](mailto:nhhan@kyungnam.ac.kr)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마케팅학부 조교수(교신저자), [cdw@bufs.ac.kr](mailto:cdw@bufs.ac.kr)

## I. 서론

중재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중재인이란 사법적 절차를 주관하여 중재판정을 내리는 사람<sup>1)</sup>을 말한다. 더욱이 중재인의 선정에 특히 제약을 두지 않는 한 누구를 선정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다.<sup>2)</sup> 우리 중재법 제12조(중재인의 선정)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으며, 제2항은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영국중재법(이하, 영국중재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중재인의 수당은 당사자들이 분담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 중재법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안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의 중재비용은 다르게 산출되고 있다.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중재비용은 관리비용(부가가치세), 중재인수당과 중재경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제중재는 신청요금 1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중재판정문에서 부담자와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2억원 이하의 사건은 정부에서 40만원을 지원해 준다. 중재신청금액이 아무리 크다 해도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의 중재비용은 1억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sup>3)</sup>

중재인의 역할·권한과 비용에 비추어 보면 그 선정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지만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중재에서는 비교적 신속한 단계로 단기간내에서의 결정이 요구된다. 즉, 중재절차 개시의 통지(제14조)와 중재인 선정의 통지(제16조)를 겸하는 중재조항과 실무를 위해 복수 중재인의 경우 신청인은 중재절차의 개시 전에 1명을 선정하고 또한 상대방은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2명째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단독중재인의 경우 해당 통지로부터 14일 이내(LMAA Terms 2017 para 11)에 공동으로 선정해야 한다.<sup>4)</sup>

1) D. S. J. Sutton, et al., *Russell on Arbitration*, 24th ed., Sweet & Maxwell Ltd, 2015, para.4-002.

2) 그 제약의 사례가 중재관련 전문가(상사인)(commercial men)이다(C. Style and P. Cleobury, "Jivraj v. Hashwani: Public Interest and Party Autonomy",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27, Vol.4, 2011, pp.564-565 ; 김영주, "중재인의 근로자성과 자격요건-영국 대법원의 2011년 Jivraj v Hashwani 판결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6, pp.37-42).

3) 김광수,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주요 기능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조정중재 현황』, 제129호, 2013, p.35.

4) 또한 단독중재인의 경우 신청인이 중재절차의 개시의 통지 중에 몇 명의 후보자를 상대방으로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C. Ambrose, et al., *London Maritime Arbitration*, 4th ed., Informa, 2017, para.10.9), 신청인이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며, 또한 양당사자는 14일 이내(LMAA Terms 2017 para.11) 또는 2일 이내(제16조 제3항)에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한다 ; 우리 중재법 제12조(중재인의 선정) 제3항 제1호는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

이 같이 단기기간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지 그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수당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를 하지 않고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중재인 수당은 중재인 자신이 결정한 비공식적인 시간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또한 사안의 성질과 종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수당도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sup>5)</sup> 분명히 LMAA 정회원을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 중재인과 수당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으며,<sup>6)</sup> 또한 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약정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sup>7)</sup>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재인과 당사자간에는 LMAA Terms에 따른다는 것만의 중재인 계약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sup>8)</sup>

이 배경에는 LMAA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중재인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sup>9)</sup> IC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의 ICC중재안건에 있어 중재인 수당이 차지한 비율은 16%이었다고 하지만<sup>10)</sup>, LMAA 중재에서는 더욱더 낮은 비율이라고 한다.<sup>11)</sup> LMAA 정회원의 시간단가는 300-350파운드이지만, 대리인,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의 수당과 비교하면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재인의 선정에 있어 중재인의 수당은 검토요소로서 우선순위는 낮다고 한다.<sup>12)</sup> 따라서 중재인의 수당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 수당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중재인 수당은 중재인의 공정성·공평성에 연결되는 문제이다. 다만 실무상 중재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C. Ambrose, et al., op.cit., para.20., para.21.6. 이것에 대해 기관중재 중에는 시간단가의 최고액(예를 들어 런던 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LCIA) ; 일본상사중재협회(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 JCAA)과 총액의 목표(ICC)를 공표하고 있다.
- 6) C. Ambrose, et al., op.cit., para.20.3, para.20.9. 일반적인 국제상사중재에서도 해당 중재인의 심증을 해하는 것을 우려하여 감액의되는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다(N. Blackaby and C. Partasides,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ara.4.210).
- 7) B. Harris, "What to charge and how to get paid: the sequel", *Arbitration*, Vol.68, 2002, p.253, p.259. ; C. Ambrose, et al., op.cit., para.10.58. 한편 비정회원을 선정할 때는 수당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LMAA ICP 2017 para.17과 SCP 2017 para.3은 수당에 제한을 두고 있다.
- 8) 수입의 신청은 법정변호사가 중재인 후보자에 대해 이메일로 사안의 개요를 매우 간결하게 설명하고(당사자명, 선명, 계약분쟁의 때는 계약의 종류 등), 일반적으로 수입의 여부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 D. S. J. Sutton, et al., op.cit., para.4-027 ; R. Merkin, *Arbitration Law*, Informa, 2018, para.11.4 ; T. Elsworth, "The Arbitrator's Appointment-a frustrating business?", Paper presented at ICMA XX, 2017, p.5.). 이것에 대해 중재인은 LMAA Terms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한다고만 설명하여 신청을 승낙한다(C. Ambrose, et al., op.cit., para.1.15; *Fal Bunkering of Sharjah v. Grecale Inc of Panama* [1990] 1 Lloyd's Rep. 369). 이것만으로 중재인과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하고 더욱이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에서 중재인이 적법하게 선정된다(*Tradax Export S.A. v. Volkswagenwerk (The La Lama)* [1970] 1 Lloyd's Rep.62, 64(CA)).
- 9) B. Harris, "London Maritime Arbitration", *Arbitration*, Vol.77, 2011, p.116, p.123.
- 10) *Techniques for Controlling Time and Costs in Arbitration*(ICC Publication No.843, 2007). 또한 주장입증에 관한 비용(대리인수당을 포함한다)이 82%이며 ICC의 관리비용이 2%이었다고 한다.
- 11) B. Harris, "Ouch!-Costs in Shipping and Generak Commercial Arbitration", 2013, p.9, Paper Presented at the 2013 Seminar, (2013), Retrieved October 30, 2019, <http://www.lmaa.london/uploads/documents/%20talk.pdf>
- 12) CIArb, "Interview for prospective arbitrators, Article 2",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Guideline 2016* ; 참고로 일본문헌에서는 수당을 고려요소로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中村達也, "國際仲裁における仲裁人の選任—JCAA仲裁の實務を中心として", 「ジュリスト」, 1502号, 2017, p.82).

때문에 그 내용이 복잡하며 또한 사안별로 처리형태가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중재법과 LMAA Terms 2017에서 중재인의 수당·경비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 내용은 중재인과 당사자의 관계(수당청구권, 수당의 종류, 지급의 확보)와 당사자간의 관계(중재인수당의 부담비율)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양자를 비교분석한 후 중재비용 납부의 확보 수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II . 중재인의 수당청구권

### 1. 합리적인 금액의 수당·경비

일방당사자 또는 양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중재비용이라 하며 중재비용은 관리비, 실비, 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중재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미리 예납되거나 그 부담은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판정시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이 정하여 진다.

중재인 수당은 분쟁금액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되지 않고 분쟁금액에 따라 최소 수당과 최대 수당만을 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당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상의 경우 사무국에서는 중재신청의 접수시 중재인 수당의 최소, 최대 구간의 평균금액을 예납하도록 양당사자에게 요청하며 대부분의 경우 최종적인 중재인 수당도 평균금액으로 결정된다.

대개는 단독중재인에 의한 심리가 원칙이지만 당사자들이 3명 중재인의 심리로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당사자 의사, 분쟁의 복잡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3명의 중재인의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명의 중재인의 심리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중재인의 수가 달라질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중재인 수당도 인원수만큼 달라지게 된다. 더욱이 분쟁금액 2억원 이하의 신속절차 사안 중재인에게는 국제중재규칙 별표2 제1조 제1항에 따라 중재인 수당표의 최소금액을 중재인 수당으로 부과한다. 다만, 국제중재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사무국이 선정하는 신속절차 사안 중재인)에게는 중재비용일람표상의 중재인수당평균액을 중재인 수당으로 부과한다.<sup>13)</sup>

중재인에게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중재인이 중재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도 모두 보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포함하여 기관중재의 경우 일반

1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비용”, 접속일 2019.11.20.,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6\\_02.jsp?sNum=5&dNum=0&pageNum=1subNum=6](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6_02.jsp?sNum=5&dNum=0&pageNum=1subNum=6)

적으로 중재기관의 사무국이 중재당사자들로부터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징수하여 이를 중재인에게 지급한다. 이를 위해 중재기관은 당사자들로부터 납부받는 비용(중재인 보수 포함)의 산정에 관한 표를 중재규칙에 첨부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중재기관의 홈페이지에 중재비용 산정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sup>14)</sup>

중재인과 당사자간에 수당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한다(제28조 제5항).<sup>15)</sup> 다만 LMAA 중재에서는 중재인과 LMAA Terms에 따른다는 것만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리고 LMAA Terms는 선정료(appointment fee)와 예약료(booking fee)를 규정할 뿐이며 심리자체에 대한 수당의 규정은 없다. 그 경우 수당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영국 중재법 제28조 제1항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은 개개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금액의 수당과 경비를 중재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sup>16)</sup>

그리고 당사자들은 연대하여 중재인 수당을 납부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이것은 LMAA Terms para 13도 재확인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부는 수당·경비의 납부를 일방당사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소 당사자가 중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도 그 납부가 없으면 승소 당사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승소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전액을 납부한 때는 패소 당사자에게 비용상환을 명령하는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것에서 패소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8조 제5항).

이 합리적 금액의 수당을 받을 권리는 강행법규이며(제4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도 배제할 수 없다.

## 2. 중재판정 전의 중재인의 임무종료

이 경우에서의 중재인 수당에 대해 임무종료의 원인이 중재인에게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예를 들어 중재절차 도중에 분쟁이 화해로 해결한 경우이다. 이 때는 LMAA Terms 도 확인하도록(para18, 19, First Schedule(D)(1)(d)(ii)) 중재인의 수당·경비의 납부를 받을 권리에 변경은 없다.<sup>17)</sup> 또한 중재인이 중재절차 중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

14) 이재석, “영국과 미국의 법원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사법정책연구원, 제2015-10호, 2015, p.33.

15) Hussmann(Europe) Ltd. v. Al Ameen Developemnt & Trade Co. [2000] 2 Lloyd’s Rep.83, 71.

16) C. Ambrose, et al., op.cit., para.10.58. 다만 합리적 금액을 지불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다(The Departmental Advisory Committee on Arbitration Law Report on Arbitration Bill 1996(DAC Report), p.128 ; D. S. J. Sutton, et al., op.cit., para.4-052 ; Linnett v. Halliwells LLP [2009] EWHC 319(TCC), 60).

17) LMAA Terms상 중재판정부에 중결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까지의 작업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다(C. Ambrose, et al., op.cit., para.20.11). 또한 중재인의 선정이 부적법이며 무효로 된 경우라도 수당을 받을 권리는 상실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D. S. J. Sutton, et al., op.cit., para.4-053 ; C. Ambrose, et al., op.cit., para.20-49), 부적법으로 된 원인이 중재인에게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제28조 제6항, 제26조 제1항, First Schedule (D)(1)(d)(iv)).<sup>18)</sup>

한편 질병으로 인해 절차를 주관할 수 없게 된 때 중재인은 사임하거나(제25조) 사임하지 않을 때는 해임되게 된다(제23조, 제24조). 그러나 사임·해임은 임무종료의 원인이 중재인에게 있는 경우로 분류된다. 이 때 수당·경비의 납부를 받을 권리는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제28조 제4항). 즉, 법원은 수당·경비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유무, 그 금액 또한 이미 납부된 수당과 경비의 반환에 대해 재량적 판정을 내릴 수 있다(제24조 제4항, 제25조 제3항 제(b)호).<sup>19)</sup> 우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0조(중재비용의 납입의무) 제3항은 중재신청이 변경되어 분쟁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관리요금과 중재인수당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임에 대해서는 임의법규정이기 때문에(제25조 제1항, 제4조) LMAA Terms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즉,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First Schedule, para 6), 또한 수당의 미지급이 계속되었기 때문에(First Schedule(C)) 사임한 때는 사임 전에 발생한 수당·경비가 지급된다.

### Ⅲ. 중재인의 수당·경비의 내용

#### 1. LMAA 중재에서의 수당·경비

LMAA Terms에 기초하여 중재인을 선정한 경우 다음의 항목의 수당·경비를 납부한다.<sup>20)</sup> 즉, ① 선정료(appointment fee)(First Schedule(A)), ② 예약료(Booking fees)(First Schedule(D)), ③ 심리에 대한 수당(서면·증거의 검토, 구술심리로의 출석, 중재판정의 작성 등), ④ 중재판정부가 지출한 비용, ⑤ 부가가치세(VAT)이다. 아래에 항목별로 다시 설명한다.

18) C. Ambrose, et al., op.cit., para.20.45.

19) D. S. J. Sutton, et al., op.cit., para.4-005 ; R. Merkin, op.cit., para.10-57 ; *Wicketts and Sterndale v. Brine Builders* [2001] App. L.R. 06/08. 단독중재인의 절차관리가 원활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중재인 수당이 고액화되었다. 중재인은 신청인의 무자력이 의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대해 양당사자에게 담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에(2중 담보) 더욱이 대폭으로 지연했다. 그 결과 법원은 해임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불필요한 작업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던 작업에 대한 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반액만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해임절차에 필요한 재판비용의 상환도 명령하였다. 자주 중재인의 해임은 중재인에게 이익상반의 의심이 있을 때에 문제가 된다(제24조 제1항 제(a)호). 최근 *Cofely Ltd. v. Bingham*사건([2016] EWHC 240 (Comm))에서 해임이 인정되었지만 그 이후의 절차에서 법원은 중재인 수당과 해임절차비용의 부담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John, Denis-Smith, "When the Kings departs: costs and the removal of an arbitrator", *Practical Law*, (2016), Retrieved October 10, 2019, <http://arbitrationlog.practicallaw.com/when-the-kings-depart-costs-and-the-removal-of-an-arbitrator>).

20) C. Ambrose, et al., op.cit., para.20.11.

## 2. 선정료(appointment fees)

선정료는 중재인을 선정할 때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선정한 당사자가 우선 납부해야 한다. 단독중재인의 경우는 각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납부한다. 3명제의 중재인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인이 납부한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의 원칙에 따른다. 이 비용은 250파운드이다.<sup>21)</sup>

당사자가 각각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중재신청인은 선정료를 납부하고 1명제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 성명과 주소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중재절차 개시의 통지로 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화해로 분쟁을 해결한 경우 선정료는 중재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된다.<sup>22)</sup> 그 경우 선정료는 각 당사자의 자기부담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예약료(booking fees)

당사자는 중재인이 구술심리를 위해 예정을 비워 두는 것의 대가로서 예약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담보로서의 보수의 일부 선납부이다. 예를 들어 중재인이 구술심리를 위해 예정을 비워 두었지만 그 이후의 화해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술심리가 취소되었다고 한다. 그 비워 둔 기간에 별도의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면 중재인은 그 기간은 무수입이 된다. 부업의 중재인이라면 그 기간을 본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시간상실을 회피할 수 있지만 전업의 직업중재인이라면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중재인의 일실이익의 담보로서 예약료를 납부해야 한다.<sup>23)</sup>

예약료의 취급에 대해 First Schedule(D)는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기초하여 구술심리의 개최를 구하는 당사자가 또는 양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예약료를 납부한다. 10일 이내의 일정이라면 중재인별료 1일 당 1,000파운드이다.<sup>24)</sup> 10일을 초과하여 15일 이내라면 30% 증액, 20일 이내라면 60% 증액, 20일을 초과면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First Schedule(D)(1)(b)). 이 납부가 없을 때 중재판 정부는 구술심리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sup>25)</sup> 예정이 취소된 때 그것이 예정일보다 3개월

21) LMAA, "Notes on Fees", (2019), Retrieved November 21, 2019, <http://www.lmaa.london/notes-on-fees.aspx>

22) B. Harris, et al., "London Maritime Arbitra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9, 1993, p.275, p.282.

23) C. Ambrose, et al., op.cit., para.20.17 ; K/S A/S Norjarl v. Hyundai Heavy Industrie Co. Ltd. [1991] 1 Lloyd's Rep. 524.

24) LMAA, op.cit. ; 일반적인 일당은 1,000파운드라고 설명하고 있다(B. Harris(2002), op.cit., p.253, p.258).

25) 어느 쪽의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지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 그 경우 청구서의 주소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른다(LMAA 2017 Terms, Explanatory Notes, p.8). 양쪽의 당사자에게 청구서가 보내지는 경우 일방당사자가 납부를 거부하면 구술심리가 취소되어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서 그것을 바라지 않는 타방 당사자는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C. Ambrose, et al., op.cit., para.20.17).

이상 전이라면 반액을 반환하지만 그 이외는 몰수된다.<sup>26)</sup>

## 4. 심리에 대한 수당

### 1) 개요

소액분쟁요금(Small Claim Fee : SCP)은 중재인선정요금, 사전협의절차비용(interlocutories), 심리비용, 판정문작성수당 등으로 구성된다.<sup>27)</sup> 그러나 LMAA Terms 2017 하에서는 사;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SCP 규칙은 요금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있어 중재인 수당이 확정되어 있다. 이 때 LMAA 사무국은 관리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분쟁요금을 중재인에게 직접 송금한다. 중재인에게 송금되는 소액분쟁요금은 절차 개시를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중재인이 합의된 이상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송금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권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중재인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중재인은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고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추가요금을 송금해야 한다.<sup>28)</sup>

중재인 수당이 발생하는 작업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서류를 보거나 중재절차를 지휘한다. 이들은 Interlocutory work<sup>29)</sup>이라 불린다(LMAA Terms para 1, First Schedule (D)(2)). 둘째, 구술심리가 열릴 때는 당사자와 증인을 심리한다. 셋째, 이들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다.

26) 3개월 전에 취소를 통지받아도 그 예정을 보충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할 것이다(B. Harris(2002), op.cit., p.253, p.259 ; B. Harris, et al., op.cit., p.275, p.282).

27) The Small Claims Procedure, Art.3(a).

28) 이원정·김성룡, “해사중재에서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와 대한상사중재원(KCAB)간의 소액·신속절차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2, p.273.

29) 중재판정의 유형은 그 판정시기를 기준으로 본안 전 절차(중간판정)(interlocutory award; 임시판정(interim award))와 종국판정(final award)으로 구분될 수 있고, 해당 사건을 완결시키는 범위에 따라 전부판정, 일부판정, 추가판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종국판정은 분쟁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을 의미하고, 중간판정은 중재에 대한 심리 중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단함으로써 종국판정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부판정(full award)은 중재신청의 대상 전부에 대하여 심리를 완료한 경우에 하는 판정을 의미하고, 일부판정(partial award)은 중재신청의 대상 일부에 대하여 심리를 완료한 경우에 하는 판정을 의미하며, 추가판정(additional award)은 중재신청의 대상 중 일부에 대한 판정을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판정을 의미한다(양병희 외, 「주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2006, pp.128-129) ;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 p.61, pp.59-84) ; 결정은 대체로 중간 내지 절차적(interlocutory or procedural) 결정 및 실체적(substantive) 결정으로 구분된다. 법관-중재인은 전자(前者)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하에 당사자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draw up)하도록 하고 이를 승인하거나 법원직원(judge’s clerk)이 작성한 결정문 초안을 승인한다. 결정 및 중재판정문에는 중재비용(costs and fees)의 액수 및 부담의무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에 관해서는 명세서가 송부된다. 법관-중재인의 선정이후 각각의 심리기일 진행에 따라 당사자 쌍방은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비용을 공동 납부하거나 비용분담결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을 위한 심리기일의 경우 통상의 절차에서는 법관-중재인은 영국 중재법 제56조(비용미납에 따른 중재판정 보류 권한)에 따라 중재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영국 중재법 제56조(Power to withhold award in case of non-payment) 제1항은 “The tribunal may refuse to deliver an award to the parties except upon full payment of the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할 비용 총액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모든 비용이 납부된 이후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진다(이재석, 전게서, p.50).

LMAA 중재에 있어 수당은 기본적으로 시간급 수수료(시간급 보수산정)(Time Charge)이며 중재인별로 시간단가가 다르다. 또한 구술심리에 대해 서류작업과 같은 비율을 이용하는 중재인도 있으며 특별하게 높은 비율을 이용하는 중재인도 있다고 한다.<sup>30)</sup>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시간별 보수 산정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보수의 상한도 정해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환경은 이와 큰 차이가 있다. 분쟁사건의 경우 시간급 보수산정 방식이 아닌 착수금/성공보수의 정액 방식으로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변호사의 투입시간이 착수금/성공보수 대비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전하기 어렵다.<sup>31)</sup>

## 2) 합리적인 금액·법원에 의한 조정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인 수당은 사무국이 분쟁의 성격과 금액, 중재인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중재인 수당을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중재인수당 상한액을 철폐하여 더욱 많은 외국 중재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재인의 시간당 보수는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이 중재인의 지위와 경험, 분쟁의 성격과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사무국은 중재인들이 작성·제출한 소요시간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중재인과 협의하여 조정한다.<sup>32)</sup>

수당에 대해 당사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 금액은 중재인 자신이 결정하게 된다.<sup>33)</sup> 그러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sup>34)</sup> 당사자는 개개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금액의 조정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영국 중재법 제28조 제2항). 또한 합리적 금액 이상의 수당을 이미 납부하고 있더라도 법원은 반환명령을 내릴 수 있다(영국 중재법 제28조 제3항). 그래서 법원의 개입을 바라지 않는 중재인은 당사자와 수당합의를 해 둘 필요가 있다.<sup>35)</sup>

그러나 법원이 수당을 조정하는 것은 드물다. 즉, 시간당 보수산정 방식의 경우 신청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① 시간단가가 불합리하게 고액인 것, ② 소요한 시간이 과대한 것, ③ 소요하지 않는 시간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에는 시간단가의 설정과 시간의 사용방법에 재량이 있으며 그것을 이탈하는 경우는 한정적이다.<sup>36)</sup>

30) C. Ambrose, et al., op.cit., para.20.11.

31) 김홍중, “Third Party Funding을 통한 국제중재사건의 비용 조달”, 『중재논단』, 제351호, 2019, p.13.

32) 윤병철·이철원·조건희, 『우리 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가이드』,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3, p.112.

33) C. Ambrose, et al., op.cit., para.201. ; R. Merkin, op.cit., para.10.64.

34) “It is a delicate and perhaps embarrassing tasks to fix one’s own remuneration”(S. N. Kujjian (Commodity Brokers) Ltd. v. Markrting Exchange for Africa Ltd. (No.2) [1986] 2 Lloyd’s Rep.618, 620).

35) Hussmann(Europe) Ltd. v. Al Ameen Development & Trade Co. [2000] 2 Lloyd’s Rep.3, 71.

36) C. Ambrose, et al., op.cit., para.20.5 ; D. S. J. Sutton, et al., op.cit., para.4-059 ; The Vinden Partnership Ltd. v. ORCA LGS Solutions Ltd and another [2017] EWHC B24(TCC), 7 ; 또한 재정인이 수당의 내역(얼마의 시간단가로 무엇이 대해 몇 시간을 소요했는지)을 설명한 후 재정인이 합리성이 있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지만 당사자는 합리성을 의심하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Fenice Investments Inc v.

①에 대해 합리적인 시간단가에도 폭이 있다. 다른 중재인과 비교하여 고액이더라도 분명히 합리성을 결여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물다.<sup>37)</sup>

②에 대해 중재판정부 내부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여 상세한 중재판정을 작성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합리했는지는 사안의 복잡함과 중대함, 청구금액, 검토해야 할 증거량, 구술심리를 위한 시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sup>38)</sup> 더욱이 중재판정부가 성실하다면 불합리로는 간주되기 어렵다.<sup>39)</sup> 또한 ③에 관해 중재판정이 재판에서 취소되어도 소급적으로 시간이 허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sup>40)</sup>

사실 LMAA 중재에서 수당의 조정이 신청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sup>41)</sup> 그 배경에는 중재인이 처음부터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sup>42)</sup> 합리적 금액에 대해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으며 별도의 기회에서 해당 중재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있다.<sup>43)</sup> 그래서 사전에 시간단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사자로부터 문의하는 것은 주저되고 있다.<sup>44)</sup>

## 5. 중재판정부의 지출 비용

이 전형적인 예는 통신비, 이동비, 숙박비이다(First Schedule(G)). 또한 중재판정부가 독자적으로 전문가, 법률고문과 기술평가원을 기용한 때는 그 수당·경비도 포함된다(영국 중재법 제37조).

또한 당사자들은 상황에 적절하고 합리적 수당 및 경비를 중재인에게 지불 할 책임이 있다(영국 중재법 제28조 제1항). 그래서 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를 기용한 때 그 필요 여부와 금액의 합리성이 문제시된다.<sup>45)</sup> 인정되지 않은 예로서 법률고문의 수당이 과대

Jerram Falkus Construction Ltd [2011] EWHC 1678(TCC), 7).

37) S. N. Kukjian(Commodity Brokers) Ltd. v. Markrtng Exchange for Africa Ltd. (No.2) [1986] 2 Lloyd's Rep.618, 621-623 ; Fenice Investments Inc v. Jerram Falkus Construction Ltd [2011] EWHC 1678(TCC), 35.

38) C. Ambrose, et al., op.cit., para.20.7.

39) Hussmann(Europe) Ltd. v. Al Ameen Developemt & Trade Co. [2000] 2 Lloyd's Rep.3, 75, 76.

40) Hussmann(Europe) Ltd. v. Al Ameen Developemt & Trade Co. [2000] 2 Lloyd's Rep.3, 75.

41) C. Ambrose, et al., op.cit., para.20.27, para.20.52 ; Clive, Aston, "A look at the London Arbitration Scene", (2015), p.3, Retrieved October 30, 2019, <http://www.lmaa.london/Papers-from-Seminars.aspx> ; 과거 30년간 조정의 신청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한다(B. Harris(2002), op.cit., p.257).

42) 그러나 모든 중재인이 공명정대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자신보다도 경험이 있어 명성이 있는 중재인과 같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자와 중재판정부내에서의 동료가 대부분의 작업을 하고 그 수당을 확인한 후 그 보다도 조금 적은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B. Harris(2002), op.cit., p.253, p.257. ; B. Harris(2013), op.cit.

43) B. Harris(2002), op.cit., p.253, p.259.

44) Clive, Aston, op.cit. ; C. Ambrose, et al., op.cit., para.21-13; 당연히 중재인 중에는 수입 이메일 내에 시간 단가도 명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명확성을 위해 계속(繫屬)금액에 연동시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계속 금액과 사건의 난이함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소·과대한 수당이라는 문제의 해결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B. Harris(2002), op.cit., p.257 ; B. Harris(2011), op.cit., p.116, p.123).

45) D. S. J. Sutton, et al., op.cit., para.4-086.

하게 된 것,<sup>46)</sup> 중재판정을 타이핑하는 비용이 불필요하게 된 것,<sup>47)</sup> 법정변호사에게 중재판정을 기안하여 받는 비용이 과대하게 된 것<sup>48)</sup>이 보고되고 있다.

## 6. 부가가치세(VAT)

중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sup>49)</sup>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판정부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상사중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50)</sup>

그런데 영국 중재법의 경우 이로 인해 중재인과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영국 거주자인 때는 중재인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가산된다고 보고 있다.<sup>51)</sup> 또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에 대해 중재비용의 담보를 명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영국에 거주하지 않은 자연인이거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인 경우에는 중재비용의 담보를 명할 수 없다.<sup>52)</sup>

## IV. 중재비용 납부의 확보 수단에 대한 시사점

### 1. 개요

중재인 수당·경비의 납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중재판정부는 유치권(lien)을 행사하고

46) S. N. Kukjian (Commodity Brokers) Ltd. v. Marketing Exchange for Africa Ltd. (No.2) [1986] 2 Lloyd's Rep.618, 624-625.

47) Hussmann (Europe) Ltd. v. Al Ameen Developemnt & Trade Co. [2000] 2 Lloyd's Rep.3, 77.

48) Agremix Ltd. v. Tradigrain S.A. [2003] 2 Lloyd's Rep. 537 ; GAFTA 중재의 사안이다. 일반론으로서 중재판정을 기안하기 위해 보조자를 기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인정을 하여 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중재판정부이기 때문에 보조자의 역할은 한정적이며 또한 그 비용도 중재판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억지로 법정변호사를 기용하고 또한 구술심리에도 출석하게 하여 중재판정을 기안하게 하여 9,000파운드를 비용으로서 청구하였다. 당사자는 5,000파운드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또한 고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금액만을 비용으로서 인정하였다.

49) LMAA ICP 2017 para 19(c) ; LMAA SCP 2017 para 2(b), para3(b)(c) ; Jivraj v. Hashwani[2011] UKSC 40. 21, 40.

50) 법률서비스, “예규·판례검색”, 1999.9.28., 접속일 2019.11.20., [http://www.taxpark.com/laws/viewbody\\_district.php?tbl=lawdistrict&lawtitle=4&page=283&number=24665&keyfid=&key1=&key2=&key3=&key4=&ct=&code=&mode=](http://www.taxpark.com/laws/viewbody_district.php?tbl=lawdistrict&lawtitle=4&page=283&number=24665&keyfid=&key1=&key2=&key3=&key4=&ct=&code=&mode=)

51) C. Ambrose, et al., op.cit., para.20.11.

52) 박태원, “영국 해상중재제도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월간·해양수산」, 제237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p.40.

수당·경비가 전액 납부되기까지 중재판정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도 만능이 아니다. 오히려 중재판정보다도 화해로 종결하는 것이 많으며,<sup>53)</sup>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서를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중재인은 당사자들을 제소할 수 있지만 영국에 자산을 가지지 않는 외국당사자이라면 회수는 곤란하다.<sup>54)</sup> 그래서 원래 미납부를 적게 해야 하며 중재인은 선수금(advance payment), 중간납부금(interim payment) 과 담보(security for tribunal costs)를 요구할 수 있다.<sup>55)</sup> 아래에서는 이들의 수단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 2. 유치권

### 1) 개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이 완성한 때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문을 교부한다(영국 중재법 제55조 제2항).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중재인 수당·경비가 전액 납부되기까지 중재판정문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영국 중재법 제56조 제1항, 제55조 제3항).<sup>56)</sup> 이것은 유치권(lien)이라고 불리며 중재인 수당의 납부 확보를 위한 보통법상의 전통적 수단이다. 또한 강행법규이기도 하다(영국중재법 제4조 제1항).

LMAA Terms도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이 완성한 때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그 때 미납부의 수당·경비가 전액 납부된 후 중재판정문을 교부하는 취지도 전달한다. 이 시점에서는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문과 그 복사는 교부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수당·경비 전액이 납부되기까지 중재판정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para 25). 즉, 중재판정부는 중재인의 수당, 비용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중재판정문을 발송,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sup>57)</sup>

53) LMAA, "Event", (2019), Retrieved November 15, 2019, [http://www.lmaa.london/event.aspx?pkNewsEventID=208da443\\_7800\\_4720\\_84b3\\_7f4f3f5fc9ce](http://www.lmaa.london/event.aspx?pkNewsEventID=208da443_7800_4720_84b3_7f4f3f5fc9ce)

54) C. Ambrose, et al., op.cit., para.20.35, para.20.36.

55) 다만 LMAA 중재인이 선수금과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드물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고 보고 있다(Clive, Aston, op.cit.). 분명히 LMAA Terms 1997은 선정료, 예약료, 비용만을 규정하고 중간납부와 담보를 규정하지 않았던 것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종래의 실무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납부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LMAA Terms 2002에서 이들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B. Harris(2002), op.cit., p.261).

56) 예를 들어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신속절차 중재규칙 제20조(예납 및 지불) 제2항은 당사자가 예납금 또는 추가 예납금 중 자기부담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그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당 센터는 다른 당사자가 예납금 전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그러한 예납금이 당 센터가 고지한 후 14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에 의해 지불되지 않는 경우(또한 미납 당사자로부터 지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독점적 재량으로 다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제a)호. 중재 및 심리를 진행하고 미납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미납 예납금 또는 추가 예납금에 대한 모든 지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재판정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제b)호 지급불이행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모든 요청 예납금이 지불될 때까지 또한 지불되지 않는 한, 중재절차 또는 그 일부를 중지 또는 종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신속절차 중재규칙」, 2015, p.32).

57) 박태원, 전게서, p.41.

중재판정부로서는 전액이 납부되기만 하면 되며 누가 납부할 지는 불문한다(원래 연대 채무이다(영국 중재법 제28조 제1항)). 그래서 당사자간에 협의하고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납부하고 제3중재인의 비용을 절반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sup>58)</sup>

## 2) 유치권의 제재

당사자는 이의신청·상소기한과의 관계에서 신속하게 중재인 수당·경비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영국 중재법 제67조, 제68조)과 상소(제69조)의 기한은 중재판정의 일자(중재인이 중재판정에 서명한 일자, 중재인이 복수의 때는 최후에 서명한 일자(제54조 제2항))로부터 28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제70조 제3항).<sup>59)</sup> 이로 인해 중재판정부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그 만큼 기간이 짧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과하는 경우도 있다.

기한경과 후에 패소한 당사자가 기간의 연장(영국 중재법 제79조, 제80조 제5항, CPR 제62조 제9항)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한을 도과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는 자주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sup>60)</sup> 따라서 일반적으로서 이의신청·상소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수당·경비를 신속하게 납부해야 한다.<sup>61)</sup>

## 3) 합리적 수당·법원에 의한 조정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요구하는 금액 또는 그 보다 작은 금액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금액을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재판정문을 교부하도록 중재판정부에 명령할 수 있다. 그 후 법원이 합리적 금액을 산정하고 법원에 기탁되어 있던 금전 중에서 중재판정부에 납부한다(영국 중재법 제56조 제2항, 제3항).

58) The Hilal I [2010] EWHC 442 (Comm), 59. 이 사안에서는 중재판정부가 LMAA Terms para 25의 통지를 송부하기 약 3주일 전에 당사자에게 납부 준비를 요구하고 수당 내역의 설명을 하고 있다 ; 그런데 당연히 당사자로부터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LMAA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내역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B. Harris(2002), op.cit., p.258).

59) 이것에 대해 우리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3항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문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정정·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0) The Hilal [2010] EWHC 442(Comm), 59 ; S v. A&B [2016] 1 Lloyd's Rep. 604 ; Rollitt v. Ballard [2017] EWHC 1500(TCC) ; Squibb Group Ltd v. Pole 2 Pole Scaffolding Ltd [2017] EWHC 2394(TCC).

61) The Faith [1993] 2 Lloyd's Rep. 408, 411 col.2. 당연히 어느 쪽에 지불할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르며 복잡하다(R. Merkin, op.cit., para.10.70). ① 신청인이 승리에 자신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 미납부 수당을 전액 납부하고 중재판정문을 수령한다. 그리고 패소 당사자에게 중재비용의 납부를 명령하는 판정의 집행도 행한다. ② 그러나 지불해야 할 수당에 비교하여 인정액이 작다고 예상될 때 그 이후의 집행·구상의 시간을 고려하여 먼저 수당전액을 지불하기까지 중재판정문을 수령하는 동기는 약하다. ③ 한편 중재신청인이 패소하고 또한 이의신청·상소의 의사도 없을 때 문제이다. 승리한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납부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을 취득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LMAA Terms para 16은 중재판정문 작성에서 1개월이 경과해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독촉할 수 있으며 그 후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중재인은 소를 제기해야 한다.

### 3. 미납부에 대한 대응

#### 1) 선수금(advance payment)

중재 비용과 중재인 보수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재량에 의하여 중재판정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sup>62)</sup>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조항에서 미리 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된 비율이 적용된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경우 신청액에 따라 중재비용을 정하지 않고 시간당 보수로 계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변호사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sup>63)</sup>

우리나라의 경우 예납금은 각종 세금납부, 분쟁조정, 경매절차진행 등을 위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납세고지 전에 미리 중간예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재법원에 중재신청시 납부하게 하는 금액으로서 중재인 보수, 중재인이 중재관련비용, 행정비용으로 구성되는 금액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지명요금과 예약료는 이 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중재절차 개시 시점에서의 선수금이 지명료만이라는 것이 LMAA 중재의 특징이다. 기관중재에서의 관리료와 예약료와 비교하면 상당히 소액이다.<sup>64)</sup>

#### 2) 중간납부(interim payment)

중재절차 개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미납부의 수당이 누적될 때 중재인은 발생이 종료된 수당의 납부를 확보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간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First Schedule(B)). 그리고 중재인은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에게 청구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또한 3명째의 중재인 수당은 각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분담한다.

이것은 실제로 행한 작업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선납부가 아니다.<sup>65)</sup> 또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청구서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것에서 중간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3) 담보

우리 중재법 제9조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중재인이 직접할 수 없는 것은 중재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62) ICC 중재규칙 제31조 제3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61조 등.

63) 윤병철·이철원·조건희, 전게서, p.114.

64) 우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1조(중재비용의 예납)에서는 예납금이라 부르고 있다(ICC 규칙 제36조, JCAA 규칙 제85조. 또한 TOMAC 중재규칙 제45조 제2항은 납부금이라고 하고 있다). 이들의 예납금과 납부금은 중재인 수당의 선납부의 성격을 가진다(ICC 규칙 제36조 제2항, JCAA 규칙 제85조 제1항, TOMAC 규칙 제47조).

65) *Turnes v. Stevenage Borough Council* [1997] 2 Lloyd's Rep.129 col.1 (C.A.).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문에 근거하여 대한상사 중재규칙을 중재절차의 준거법으로 하는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 중재피신청인이 변호사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신청사건이나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07조에 근거하여 중재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변호사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이 문제는 중재신청인이 위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중재피신청인이 중재신청에 응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더욱이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인은 중재신청인이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중재법 제9조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중재인이 직접할 수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중재인이나 중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지법 1998.11.17.,자, 98카기10876판결에서는 중재인은 중재판정시에 변호사비용을 중재비용의 일부로서 판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중재판정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변호사비용에 대한 담보가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중재인은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 중재신청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중재인이 직접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할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는 우리 중재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변호사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sup>66)</sup>

그런데 비엔나중재규칙 제33조(임시처분 및 보전처분/중재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제6항에서는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잠재적 비용의 잠재적 청구액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충분한 정도의 개연성을 피신청인이 증명한다면 신청인에게 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판단할 때 모든 당사자들에게 의견 표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제7항은 중재판정부의 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을 당사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요청이 있을 시 절차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제34조 제2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중재판정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재비용(중재인 수당·경비를 포함한다)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First Schedule (E) para 1).

중재판정부는 원칙으로 구술심리를 구하는 당사자(서면심리만일 때는 중재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구하지만 그 재량에서 반대의 당사자에게 구할 수 있다(First Schedule (E) para 3).<sup>67)</sup> 담보로서 법률사무소와 P&I Club의 보증장(Letter of Undertaking : LOU)을 제

66)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보제공”, 1998.11.17., 접속일 2019.11.25.,  
[http://www.law.go.kr/%ED%8C%90%EB%A1%80/\(98%EC%B9%B4%EA%B8%B010876](http://www.law.go.kr/%ED%8C%90%EB%A1%80/(98%EC%B9%B4%EA%B8%B010876)

공하게 하는 것이 되지만 중재판정부는 현금과 은행보증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First Schedule (E) para.5).<sup>68)</sup>

#### 4) 미납부에 대한 제재

위의 선납부, 중간납부, 담보제공을 당사자가 거부하면 중재절차가 중단 또는 종료한다. 선정료와 중간지불의 미납부가 28일간 계속될 때 중재인은 오로지 재량에 따라 14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사임할 취지를 당사자와 다른 중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First Schedule (C)). 또한 예약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First Schedule(D)(1)(a)).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서류를 읽는 것을 거부하거나 구술심리의 예약을 취소하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First Schedule(E)(3)). 또한 중재판정부는 확정적 명령(Peremptory order)을 내릴 수 있으며,<sup>69)</sup> 그래도 또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청구각하의 중재판정(an award dismissing his claim)에 의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First Schedule(E)(8), 영국중재법 제41조 제5항, 제6항). 이 이후 각하된 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sup>70)</sup> 다만 담보제공명령에는 자신의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절

67) 다만 법문상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제38조 제3항, 제41조 제6항. 다만 반대청구신청인도 포함한다(제82조 제1항)). LMAA Terms에서도 상대방이 구술심리를 구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쌍방이 구술심리를 구하면 쌍방이 제공하는 것이 된다(C. Ambrose, et al., op.cit., para.20.31).

68) Wealcan Enterprises v. Banque Algerienne du Commerce Exterieur SA (The Millennium) [2012] EWHC 4151 (Comm). LMAA Terms 2006에 기초하여 법률사무소의 보증장(Letter of Undertaking)과 은행보증장이 제공되었다. 승소한 당사자가 중재인 수당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보증인들에게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은행은 보증문구상 보증대상인 회수가 가능한 법률비용(recoverable legal cost)에 중재인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행을 거부하였다(은행 패소).

69) 제82조 제1항에 확정적 명령의 정의가 있지만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

70) Swallowfalls Ltd. v. Monaco Yachting & Technologies SAM [2015] EWHC 2013 (Comm) ; 슈퍼요트건조계약에 LMAA 규칙에 따르는 취지의 중재합의가 있었다. 또한 발주자는 도급인에게 건조자금원조를 하고 재판관할합의가 있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도급인이 건조계약에 기초하여 중재를 제기하였다. 이것에 대해 발주자는 대출계약에 기초한 대여금반환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재사안의 반대신청이었기 때문에 재판은 중지되고 중재로 통일화되었다([2014] 2 Lloyd's Rep.50(CA)).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도급인에 대해 20만파운드의 담보를 적립하거나 또는 결산서류를 제출하도록 확정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급인은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 이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도급인의 청구를 제41조 제6항에 따라 각하하였다. 그 결과 발주자의 대출금상환청구소송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발주자는 법원에 판결을 구했다. 이것이 이 사건이다.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각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건조계약위반의 반론을 하는 것은 절차남용(abuse of process)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인정하였다 ; 이것에 대해 ICC 규칙 제36조 제6항은 예납금의 미납부가 있으면 절차가 각하되었다고 간주하고 그 이후의 재제기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된 예로서 BDMS Ltd. v. Rafael Advanced Defence Systems 사건([2014] 1 Lloyd's Rep.576)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납부를 요구하여 중재신청을 하고 자기부담금의 예납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중재비용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예납금잔고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것이 싫다면 원고가 는 잔액을 선대납부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잔액 13,500달러가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종료시켰다. 원고는 피고에 의한 중재합의의 이행거절에 의해 중재합의가 실효되었다고 하여 재판을 제기하였다. 이 판결은 중재합의는 실효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의 중지를 명령하였다(D. S. J. Sutton, et al., op.cit., para.5-009).

차(제1조 제(a)항, 제33조 제1항 제(b)호)를 희생으로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발동이 요구된다.<sup>71)</sup>

#### 4. 최종적인 부담자-당사자의 관계

##### 1) 비용부담에 관한 중재판정

지금까지 중재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보아 왔다. 이것은 중재인과 당사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할지는 별도의 문제이다.<sup>72)</sup> 이 점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 중에 제시한다(영국중재법 제59조 제1항 제(a)호, 제61조 제1항). 그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다(제61조 제2항).

이 같이 패소자 부담이 전액을 부담한다는 원칙 하에 승소한 신청인이 납부한 것에 대해 패소 당사자에게 상환이 명령된다. 이것은 중재판정이기 때문에 승소한 신청인은 비용의 상환을 요구하여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영국중재법 제66조).<sup>73)</sup>

##### 2) 합리적인 비용·법원에 의한 조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패소자에게 부담이 명령되는 중재수당·경비의 금액은 합리적이어야 한다(제64조 제1항).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는 법원에 합리적 금액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64조 제2항).

이것이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예는 승소한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수당이 너무 고액이라고 패소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승소한 당사자X가 선정한 중재인 A의 시간단가는 1,000파운드, 패소한 당사자Y가 선정한 중재인B는 300파운드, 3명째의 중재인C는 500파운드가었다고 하자. 중재판정문의 교부를 할 때 X는 A에게, Y는 B에게 각각 전액을 지불하고 또한 C에게는 X와 Y가 50%씩 납부하였다. Y의 제64조 제2항의 신청에 따라 A의 수당이 합리적 금액으로 감액되면 Y가 X에게 상환하는 금액이 감액될 뿐이며 A의 수령금액에 변동은 없다. 결과적으로 초과분은 X가 부담하는 것이 된다.<sup>74)</sup>

71)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는 중재인의 해임사유에도 해당된다(Wicketts and Sterndale v. Brine Builders [2001] App. L.R. 06/08).

72) 중재인과 당사자간에 각 당사자가 50%씩 중재인 수당을 분담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이것은 당사자간의 중재인 수당의 부담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패소한 당사자가 전부 부담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Carter (t/a Michael Carter Partnership) v. Harold Simpson Associated (Architects) Ltd [2004] 2 Lloyd's Rep. 512).

73) A. Tweeddale and K. Tweeddale, *Arbitration of Commercial Disputes: International and English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29.68 ; D. S. J. Sutton, et al., op.cit., para.5-098.

74) Louis, Flannery, "The English Statutory Framework", in Julian D. M. Lew, et al.(eds.), *Arbitration in English with Chapters on Scotland and Irelan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3, para.11-50. ; 이론상의 문제이지만 X가 A를 선정할 때 고액의 수당을 납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이더라도 같은 결론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 V. 결론

영국중재인협회(CI Arb)는 중재인 계약을 체결할 때 중재인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지침을 두고 있다. 그것에 있어 중재인은 선정의 직전 또는 직후에 수당에 대해 서면으로 상세한 약정을 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중재에서는 선정을 할 때 중재인은 LMAA Terms에 따라 수입한다고만 설명하고 그 이상의 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LMAA Terms는 수당을 정면에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납부확보의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선정료, 예약료, 중간납부, 유치권).

그러나 이 실무는 중재인에 있어 과부족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sup>75)</sup> 즉, 합리적 금액의 납부를 받을 권리는 강행법규로서 보증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명시적으로 약정해 둘 필요는 없다. 약정이 있으면 법원에 의한 조정을 배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 현실적 필요성은 결여될 것이다. 그러하다면 LMAA Terms의 주요 목적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권한을 추가하고(선납부, 중간납부), 법률로 인정된 권한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담보), 사임과 사망 등에서도 전액의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 그 의미에서는 LMAA Terms는 잘 정리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LMAA 중재를 염두로 일반적이지만 중재인수당·경비의 구조를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기관중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지 그 구조를 정면에서 검토하는 것은 적다. 분명히 한국과 영국에서는 논의의 토양이 다르며 직업중재인은 적으며 또한 중재인 수당의 패소한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서 임의중재는 드물지 않으며, 중재인 수당의 정리는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중재제도의 근간과 관련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중재인은 당사자들로부터 수당을 받으며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임의중재에서 현저하며 각 당사자가 직접으로 수당을 납입한다. 특히 직업중재인의 경우 그 수당이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한편 중재인

즉, 수당에 대해 합의가 있는 이상 합리적 금액으로 감액되지 않고(제28조 제5항), Y도 해당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분명히 중재인계약은 해당 중재인과 양당사자간의 3자계약이 되며(K/S A/S Norjarl v. Hyundai Heavy Industrie Co. Ltd. [1991] 1 Lloyd's Rep. 524, 531, 536-537), 또한 수당납부의무는 연대책임이다(제28조 제1항). 그러나 그래도 패소한 당사자의 책임은 합리적 금액으로 한정되게 된다(The Departmental Advisory Committee on Arbitration Law Report on Arbitration Bill 1996(DAC Report), p.123 ; C. Ambrose, et al., op.cit., para.20.6. ; A. Tweeddale and K. Tweeddale, op.cit., para.29.68). 그러나 이것에 대해 반대의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R. Merkin, op.cit., para.10-61).

75) 다만 당사자간이라도 중재절차는 LMAA Terms에 따르는 것이 전제이다. 중재절차의 내용은 중재인계약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기 때문이다(Fal Bunkering of Sharjah v. Grecale Inc of Panama [1990] 1 Lloyd's Rep. 369).

은 공정·공평해야 한다. 여기에 중재인의 상충관계가 있다.

중재인 선정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구체적으로는 영국중재법 제1조 제1항 제(a)호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평·공정한 중재를 의미한다.<sup>76)</sup> 이 같이 중재인 선정권과 공평·공정한 중재 간에 상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충관계는 중재인의 지위에서의 상충관계와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즉, 중재인은 당사자의 선정에 근거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며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지만, 중재에 있어 당사자의 요구에 반하더라도 공평·공정하게 판정을 해야 한다. 이들 관계를 취급하는 전제로서 중재인 선정에서의 당사자 자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론으로서 선정한 해당 당사자와 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기회에서도 선정되어야 하며 해당 당사자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재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상충관계는 중재인의 직무와 행위규범, 더욱이 중재의 위상을 고려할 때의 시점이 된다. 최근 중재인의 공정중립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중재인 수당의 구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6) The Departmental Advisory Committee on Arbitration Law Report on Arbitration Bill 1996(DAC Report), p.155 ; D. S. J. Sutton, et al., op.cit., para.1-011.

## 참고문헌

- 강수미, “중재합의의 성립 내지 효력에 관한 준거법”,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답보제공”, 1998.11.17., 접속일 2019.11.25.,  
[http://www.law.go.kr/%ED%8C%90%EB%A1%80/\(98%EC%B9%B4%EA%B8%B010876](http://www.law.go.kr/%ED%8C%90%EB%A1%80/(98%EC%B9%B4%EA%B8%B010876)
- 김광수,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주요 기능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조정중재 현황』, 제129호, 2013.
- 김세연 외, 『국내중재절차안내』, 대한상사중재원, 2018.
- 김영주, “중재인의 근로자성과 자격요건-영국 대법원의 2011년 Jivraj v Hashwani 판결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6.
- 김홍중, “Third Party Funding을 통한 국제중재사건의 비용 조달”, 『중재논단』, 제351호, 2019.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비용”, 접속일 2019.11.20.,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6\\_02.jsp?sNum=5&dNum=0&pageNum=1subNum=6](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6_02.jsp?sNum=5&dNum=0&pageNum=1subNum=6)
- 박태원, “영국 해상중재제도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월간·해양수산』, 제237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법률서비스, “예규·판례검색”, 1999.9.28., 접속일 2019.11.20.,  
[http://www.taxpark.com/laws/viewbody\\_district.php?tbl=lawdistrict&lawtitle=4&page=283&number=24665&keyfield=&key1=&key2=&key3=&key4=&ct=&code=&mode=](http://www.taxpark.com/laws/viewbody_district.php?tbl=lawdistrict&lawtitle=4&page=283&number=24665&keyfield=&key1=&key2=&key3=&key4=&ct=&code=&mode=)
- 양병희 외, 『주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2006.
- 윤병철·이철원·조건희, 『우리 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가이드』,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3.
- 이원정·김성룡, “해사중재에서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와 대한상사중재원(KCAB)간의 소액·신속절차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2.
- 이재석,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제2015-10호, 사법정책연구원, 2015.
-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신속절차 중재규칙』, 2015.
- 中村達也, “國際仲裁における仲裁人の選任—JCAA仲裁の實務を中心として”, 『ジュリスト』, 1502号, 2017.

- Ambrose, C., et al., *London Maritime Arbitration*, 4th ed., Informa, 2017.
- Aston, Clive, “A look at the London Arbitration Scene”, (2015), p.3, Retrieved October 30, 2019, <http://www.lmaa.london/Papers-from-Seminars.aspx>
- Blackaby, N. and Partasides, C.,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Buxton, 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the Supreme Court Draws a Line”, LQR, 2012.
- Cato, Mark D., *Arbitration Practice and Procedure*, 3rd ed., Informa, 2002.
- Denis-Smith, John, “When the Kings departs: costs and the removal of an arbitrator”, *Practical Law*, (2016), Retrieved October 10, 2019, <http://arbitrationlog.practicallaw.com/when-the-kings-depart-costs-and-the-removal-of-an-arbitrator>
- Elsworth, T., “The Arbitrator’s Appointment-a frustrating business?”, Paper presented at ICMA XX, 2017.
- Flannery, Louis, “The English Statutory Framework”, in Julian D. M. Lew, et al.(eds.), *Arbitration in English with Chapters on Scotland and Irelan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3.
- Harris, B., “London Maritime Arbitration”, *Arbitration*, Vol.77, 2011.
- Harris, B., “Ouch!-Costs in Shipping and General Commercial Arbitration”, 2013, p.9, Paper Presented at the 2013 Seminar, (2013), Retrieved October 30, 2019, <http://www.lmaa.london/uploads/documents/%20talk.pdf>
- Harris, B., “What to charge and how to get paid: the sequel”, *Arbitration*, Vol.68, 2002.
- Harris, B., et al., “London Maritime Arbitra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9, 1993.
- LMAA, “Event”, (2019), Retrieved November 15, 2019, [http://www.lmaa.london/event.aspx?pkNewsEventID=208da443\\_7800\\_4720\\_84b3\\_7f4f3f5fc9ce](http://www.lmaa.london/event.aspx?pkNewsEventID=208da443_7800_4720_84b3_7f4f3f5fc9ce)
- LMAA, “Notes on Fees”, (2019), Retrieved November 21, 2019, <http://www.lmaa.london/notes-on-fees.aspx>
- Merkin, R., *Arbitration Law*, Informa, 2018.
- Style, C. and Cleobury, P., “Jivraj v. Hashwani: Public Interest and Party Autonomy”,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27, Vol.4, 2011.
- Sutton, D. S. J., et al., *Russell on Arbitration*, 24th ed., Sweet & Maxwell Ltd, 2015.
- Tweeddale, A. and Tweeddale, K., *Arbitration of Commercial Disputes: International and English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ABSTRACT

### A Study on the Means for Securing of Arbitration Expenses under the UK Arbitration Act

Nak-Hyun Han

Doo-Won Choi

The partie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o the arbitrators such reasonable fees and expenses (if any) as are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y party may apply to the court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arbitrators) which may order that the amount of the arbitrators' fees and expenses shall be considered and adjusted by such means and upon such terms as it may direct. Arbitrators' fees and expenses a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informal time fees determined by the arbitrators themselves, and the fees and expenses also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ase. Obviously, when appointing a member of the LMAA as an arbitrator, it is rare to negotiate the fees and expenses with the arbitrator and to make specific arrangements for the fees and expenses. And it is common for between an arbitrator and a party to have an arbitrator agreement only in accordance with LMAA Terms. And it is common for between an arbitrator and a party to have an arbitrator agreement only in accordance with LMAA Te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of arbitrators' fees and expenses under the UK Arbitration Act and LMAA Terms 2017. The contents can be divid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bitrator and the parties (the claim of fees, the type of fe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burden rate of arbitrators' fees).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UK Arbitration Act and the LMAA Terms 2017.

**Key Words** : UK Arbitration Act, arbitrators' fees and expenses, appointment of arbitrators, LMAA Terms 2017